

2022) 실내건축기사 4주완성 필기 3차 정오표 [2022.3.2]

■ 3. 실내디자인 시공 및 재료

| 해당 페이지 | 해당 위치                | 오   | 정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573    | 핵심 플러스<br>에<br>정답 수정 | <p><b>예</b> 다음에서 설명하는 법칙은 무엇인가?</p> <p>어떤 공장에서 330회의 전도 사고가 일어났을 때, 그 가운데 300회는 무상해사고, 29회는 경상, 중상 또는 사망 1회의 비율로 사고가 발생한다.</p> <p>① 버드법칙<br/>② 하인리히 법칙<br/>③ 더글라스 법칙<br/>④ 자베타키스 법칙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답 : ④</p> | <p><b>예</b> 다음에서 설명하는 법칙은 무엇인가?</p> <p>어떤 공장에서 330회의 전도 사고가 일어났을 때, 그 가운데 300회는 무상해사고, 29회는 경상, 중상 또는 사망 1회의 비율로 사고가 발생한다.</p> <p>① 버드법칙<br/>② 하인리히 법칙<br/>③ 더글라스 법칙<br/>④ 자베타키스 법칙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답 : ②</p> |

■ 4. 실내디자인 환경

| 해당 페이지 | 해당 위치        | 오  |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884    | 24번<br>정답 수정 | 22. ④ 23. ③ 24. ① 25. ①  | 22. ④ 23. ③ 24. ④ 25. ①            |
| 887    | 32번<br>본문 수정 | ④ 균시차는 진태양시와 평균태양시와의 차이이다.   | ④ 진태양시의 1년간 평균값에서 중앙표준시를 뺀 값이다.    |
| 1092   | 1번<br>본문 수정  | ① 물체의 형상만을 강조하는 기법으로 시각적인 눈부심이 없다.   | ① 물체의 형상만을 강조하는 기법으로 시각적인 눈부심이 없다. |
|        | 3번<br>보기 교체  | <p>수직벽면을 빛으로 쓸어내리는 듯한 효과를 주기 위해 비대칭 배광방식의 조명기구를 사용하여 수직벽면에 균일한 조도의 빛을 비추는 기법</p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■ 5. 과년도 기출문제

| 해당 페이지 | 해당 위치        | 오  | 정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|--|------|
| 78     | 29번<br>해설 교체 | <p>[해설] 박명시(薄明視 ; mesopic vision))</p> <p>㉠ 주간시와 야간시의 중간 상태의 시각을 박명시(mesopic vision)라고 하며, 박명시는 주간시나 야간시와 다른 밝기의 감도를 갖게 되나, 색상의 변별력은 있다.</p> <p>㉡ 추상체와 간상체가 같이 작용할 때를 말하며 날이 저물기 직전의 약간 어두움이 깔리기 시작 할 무렵에 작용하며 사물의 색채와 형태를 약간 식별할 수 있다.</p> <p>※ 간상체와 추상체의 특성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간상체 : 흑백으로 인식, 어두운 곳에서 반응, 사물의 움직임에 반응 - 흑백필름 (암순응)</li> <li>•추상체(원추체) : 색상 인식, 밝은 곳에서 반응, 세부 내용파악 - 칼라필름 (명순응)</li> </ul> |      |
| 86     | 60번<br>정답 수정 | 60 ②   | 60 ③ |

2022) 실내건축기사 4주완성 필기 2차 정오표 [2022.2.22]

■ 3. 실내디자인 시공 및 재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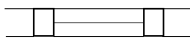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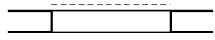
| 해당 페이지 | 해당 위치                     | 오  |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|
| 652    | 해설<br>내용 일부 삭제            | [해설] 18, 19<br>안방수와 바깥방수의 비교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  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안방수</th> <th>바깥방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적용대상</td> <td>수압이 낮고 얇은 지하실</td> <td>수압이 큰 곳에 사용<br/>(수압과 무관)</td> </tr> <tr> <td>시공난이도</td> <td>간단하다.</td> <td>정밀한 시공이 요구된다.</td> </tr> <tr> <td>본공사 추진</td> <td>방수공사에 관계없이 본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.</td> <td>방수공사 완료 전에는 본공사 추진이 힘들다.</td> </tr> <tr> <td>경제성</td> <td>비교적 싸다</td> <td>비교적 고가이다.</td> </tr> <tr> <td>내수압 처리</td> <td>수압에 견디게 하기 곤란하다.</td> <td>내수압적으로 된다.</td> </tr> <tr> <td>공사순서</td> <td>간단하다.</td> <td>상당한 절차가 필요하다.</td> </tr> <tr> <td>보호층</td> <td>필요하다.</td> <td>없어도 무관하다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안방수 | 바깥방수 | 적용대상 | 수압이 낮고 얇은 지하실 | 수압이 큰 곳에 사용<br>(수압과 무관) | 시공난이도 | 간단하다. | 정밀한 시공이 요구된다. | 본공사 추진 | 방수공사에 관계없이 본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. | 방수공사 완료 전에는 본공사 추진이 힘들다. | 경제성 | 비교적 싸다 | 비교적 고가이다. | 내수압 처리 | 수압에 견디게 하기 곤란하다. | 내수압적으로 된다. | 공사순서 | 간단하다. |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다. | 보호층 | 필요하다. |
| 구분     | 안방수                       | 바깥방수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  |
| 적용대상   | 수압이 낮고 얇은 지하실             | 수압이 큰 곳에 사용<br>(수압과 무관)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  |
| 시공난이도  | 간단하다.                     | 정밀한 시공이 요구된다.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  |
| 본공사 추진 | 방수공사에 관계없이 본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. | 방수공사 완료 전에는 본공사 추진이 힘들다.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  |
| 경제성    | 비교적 싸다                    | 비교적 고가이다.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  |
| 내수압 처리 | 수압에 견디게 하기 곤란하다.          | 내수압적으로 된다.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  |
| 공사순서   | 간단하다.                     |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다.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  |
| 보호층    | 필요하다.                     | 없어도 무관하다.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  |
| 661    | 정답 수정                     | 11. ④ 12.④ 13. ③ 14.③ 15. ③  | 11. ④ 12.④ 13. ③ 14.③ 15. ④ |     |      |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  |

■ 4. 실내디자인 환경

| 해당 페이지 | 해당 위치          | 오   | 정 |
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---|
| 923    | 표 ②-①<br>내용 수정 | 나. 다중주택[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(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, 취사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), 연면적이 660m <sup>2</sup>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 인 것] |   |
| 1039   | 17번<br>밑줄 누락   | 17. 무창층의 정의와 관련한 아래 내용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기준 내용이 틀린 것은? [20 ㉠]   |   |
|        |                | “무창층”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.   |   |

2022) 실내건축기사 4주완성 필기 1차 정오표 [2022.2.10]

■ 1. 실내디자인 계획

| 해당 페이지 | 해당 위치      | 오  | 정  |
|--------|------------|--|--|
| 247    | 11. 그림 수정  | 11. 다음 그림은 무엇의 평면 기호인가?<br> | 11. 다음 그림은 무엇의 평면 기호인가?<br> |
| 226    | 정답 수정      | 6. ④ 7. ④ 8. ③ 9. ③ 10. ③ 11. ①  | 6. ④ 7. ④ 8. ③ 9. ③ 10. ③ 11. ③  |
| 245    | 해설 2 내용 추가 | ② 붙박이창 ④ 오르내리창   | ② 붙박이창 ③ 미서기창 ④ 오르내리창  |
|        | 정답 수정      | 1. ② 2. ① 3. ② 4. ② 5. ②   | 1. ② 2. ③ 3. ② 4. ② 5. ②   |

■ 2. 실내디자인 색채 및 사용자행태분석

| 해당 페이지 | 해당 위치 | 오                       | 정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516    | 정답 수정 | 22. ② 23. ① 24. ② 25. ① | 22. ② 23. ① 24. ③ 25. ① |

■ 3. 실내디자인 시공 및 재료

| 해당 페이지 | 해당 위치 | 오                         | 정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562    | 정답 수정 | 6. ④ 7. ③ 8. ② 9. ② 10. ① | 6. ④ 7. ③ 8. ② 9. ① 10. ① |

■ 4. 실내디자인 환경

| 해당 페이지   | 해당 위치 | 오   |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|  |  |
|--|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|--|--|
| 922  | 표 수정 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공작물의 종류</th> <th>규 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옹벽 또는 담장</td> <td>높이 2m를 넘는 것</td> </tr> <tr> <td>2. 장식탑, 기념탑, 첩탑, 광고판, 광고탑</td> <td>높이 4m를 넘는 것</td> </tr> <tr> <td>3. 태양에너지 발전설비</td> <td>높이 5m를 넘는 것</td> </tr> <tr> <td>4. 굴뚝, 장식탑, 기념탑(삭제)</td> <td rowspan="2">높이 6m를 넘는 것</td> </tr> <tr> <td>5.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첩탑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첩탑 등</td> </tr> <tr> <td>6. 고가수조</td> <td>높이 8m를 넘는 것</td> </tr> <tr> <td>7. 기계식 주차장 및 첩골조립식 주차장(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)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</td> <td>높이 8m 이하(단, 위험방지를 위한 난간높이 제외)</td> </tr> <tr> <td>8. 지하대피호</td> <td>바닥면적 30m<sup>2</sup>를 넘는 것</td> </tr> <tr> <td>9.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, 저장시설(시멘트저장용 싸이로 포함), 유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0.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작물의 종류 | 규 모 | 1. 옹벽 또는 담장 | 높이 2m를 넘는 것 | 2. 장식탑, 기념탑, 첩탑, 광고판, 광고탑 | 높이 4m를 넘는 것 | 3.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| 높이 5m를 넘는 것 | 4. 굴뚝, 장식탑, 기념탑(삭제) | 높이 6m를 넘는 것 | 5.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첩탑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첩탑 등 | 6. 고가수조 | 높이 8m를 넘는 것 | 7. 기계식 주차장 및 첩골조립식 주차장(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)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| 높이 8m 이하(단, 위험방지를 위한 난간높이 제외) | 8. 지하대피호 | 바닥면적 30m <sup>2</sup> 를 넘는 것 | 9.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, 저장시설(시멘트저장용 싸이로 포함), 유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|  | 10.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|  |  |
|  |       | 공작물의 종류   | 규 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|  |  |
|  |       | 1. 옹벽 또는 담장   | 높이 2m를 넘는 것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|  |  |
|  |       | 2. 장식탑, 기념탑, 첩탑, 광고판, 광고탑   | 높이 4m를 넘는 것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|  |  |
|  |       | 3.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  | 높이 5m를 넘는 것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|  |  |
|  |       | 4. 굴뚝, 장식탑, 기념탑(삭제)   | 높이 6m를 넘는 것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|  |  |
|  |       | 5.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첩탑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첩탑 등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|  |  |
|  |       | 6. 고가수조   | 높이 8m를 넘는 것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|  |  |
|  |       | 7. 기계식 주차장 및 첩골조립식 주차장(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)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| 높이 8m 이하(단, 위험방지를 위한 난간높이 제외) |         |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|  |  |
|  |       | 8. 지하대피호  | 바닥면적 30m <sup>2</sup> 를 넘는 것  |         |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|  |  |
| 9. 건축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, 저장시설(시멘트저장용 싸이로 포함), 유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|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|  |  |
| 10.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          |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 |  |  |

| 해당 페이지  | 해당 위치            | 오   | 정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|
| 922     | 2)항<br>내용 수정     |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·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그 용도는 다음과 같이 28종류의 시설로 구분하며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  |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·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그 용도는 다음과 같이 29종류의 시설로 구분하며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|
| 949     | 핵심플러스<br>내용 추가   | <p>■ 방화문의 성능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연기·불꽃 차단시간</th> <th>열 차단시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60+ 방화문</td> <td>60분 이상</td> <td>30분 이상</td> </tr> <tr> <td>60분 방화문</td> <td>60분 이상</td> <td rowspan="2">-</td> </tr> <tr> <td>30분 방화문</td> <td>30분 이상<br/>60분 미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☞ 종전의 갑종방화문(60+ 방화문, 60분 방화문), 을종방화문(30분 방화문)에 해당된다.<br/>※ 60+ 방화문(영: 60분+ 방화문)</p> | 구 분   | 연기·불꽃 차단시간 | 열 차단시간 | 60+ 방화문 | 60분 이상 | 30분 이상 | 60분 방화문 | 60분 이상 | - | 30분 방화문 | 30분 이상<br>60분 미만 |  |
| 구 분     | 연기·불꽃 차단시간       | 열 차단시간  |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|
| 60+ 방화문 | 60분 이상           | 30분 이상  |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|
| 60분 방화문 | 60분 이상           | -   |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|
| 30분 방화문 | 30분 이상<br>60분 미만 |   |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|
| 958     | 4)항<br>내용 추가     | [주] 갑종방화문(60분+ 방화문, 60분 방화문) 및 을종방화문(30분 방화문)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 이상(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 : 차열 30분 이상)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.   |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|
| 983     | 1)항<br>내용 수정     | <p>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<br/>②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</p>  | <p>①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<br/>②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</p>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|
| 983     | 핵심플러스<br>내용 수정   | <p>예 100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시간당 최소 몇 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가? [18 기]</p> <p>① 0.5회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0.6회<br/>③ 0.7회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0.8회</p> <p>답 : ①</p>  | <p>예 30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시간당 최소 몇 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가? [18 기]</p> <p>① 0.5회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0.6회<br/>③ 0.7회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0.8회</p> <p>답 : ①</p>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|
| 984     | 3)항<br>③ 내용 추가   | <p>③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·<u>피난용</u> 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 기준<br/>(설비규칙 제14조 ②)</p>   |  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|

| 해당 페이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위치   | 오  | 정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99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)<br>표 수정 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579 197 810 248">규 모</th> <th data-bbox="810 197 1453 248">건축물의 용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579 248 810 331">① 바닥면적 합계 1,000m<sup>2</sup> 이상</td> <td data-bbox="810 248 1453 331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반(삭제)목욕장(제1종 근린생활시설)</li> <li>• 실내수영장(운동시설)</li> <li>• 실내물놀이형 시설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579 331 810 450">② 바닥면적 합계 2,000m<sup>2</sup> 이상</td> <td data-bbox="810 331 1453 450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숙사</li> <li>• 유스호스텔(교육연구 및 복지시설)</li> <li>• 숙박시설</li> <li>• 병원(의료시설)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579 450 810 568">③ 바닥면적 합계 3,000m<sup>2</sup> 이상</td> <td data-bbox="810 450 1453 568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소(교육연구시설)</li> <li>• 판매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</li> <li>• 업무시설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579 568 810 734">④ 바닥면적 합계 10,000m<sup>2</sup> 이상</td> <td data-bbox="810 568 1453 734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문화 및 집회시설(동·식물원 제외)</li> <li>• 종교시설</li> <li>• 교육연구시설(연구소 제외)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</li> <li>• 장례식장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규 모   | 건축물의 용도 | ① 바닥면적 합계 1,000m <sup>2</sup> 이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반(삭제)목욕장(제1종 근린생활시설)</li> <li>• 실내수영장(운동시설)</li> <li>• 실내물놀이형 시설</li> </ul> | ② 바닥면적 합계 2,000m <sup>2</sup> 이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숙사</li> <li>• 유스호스텔(교육연구 및 복지시설)</li> <li>• 숙박시설</li> <li>• 병원(의료시설)</li> </ul> | ③ 바닥면적 합계 3,000m <sup>2</sup> 이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소(교육연구시설)</li> <li>• 판매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</li> <li>• 업무시설</li> </ul> | ④ 바닥면적 합계 10,000m <sup>2</sup> 이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문화 및 집회시설(동·식물원 제외)</li> <li>• 종교시설</li> <li>• 교육연구시설(연구소 제외)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</li> <li>• 장례식장</li> </ul>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규 모  | 건축물의 용도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① 바닥면적 합계 1,000m <sup>2</sup> 이상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반(삭제)목욕장(제1종 근린생활시설)</li> <li>• 실내수영장(운동시설)</li> <li>• 실내물놀이형 시설</li> </ul>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② 바닥면적 합계 2,000m <sup>2</sup> 이상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숙사</li> <li>• 유스호스텔(교육연구 및 복지시설)</li> <li>• 숙박시설</li> <li>• 병원(의료시설)</li> </ul>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| ③ 바닥면적 합계 3,000m <sup>2</sup> 이상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연구소(교육연구시설)</li> <li>• 판매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</li> <li>• 업무시설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| ④ 바닥면적 합계 10,000m <sup>2</sup> 이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문화 및 집회시설(동·식물원 제외)</li> <li>• 종교시설</li> <li>• 교육연구시설(연구소 제외)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</li> <li>• 장례식장</li> </ul> |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| 10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<br>내용 추가   | ④ “시설주관기관”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함)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.) 및 교육감을 말한다.  |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| 10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)항 ②<br>내용 추가  | 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.8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 | 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.8m(신축시 0.9m)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6)항 ①<br>내용 추가  | ㉔ 속도는 분당 30m내로 하여야 한다.   | ㉔ 속도는 분당 30m이내로 하여야 한다.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| 10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)항<br>내용 수정  | ② 고정형 휠체어리프트<br>고정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반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.76m 이상, 길이 1.05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, 휠체어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.  | ② 경사형 휠체어리프트<br>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반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.76m 이상, 길이 1.05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, 휠체어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| 10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핵심플러스<br>④ 내용 수정  | ④ 대상시설의 자원조달 방안 및 지원계획   | ④ 대상시설의 자원조달 방안 및 지원계획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|

| 해당 페이지 | 해당 위치  | 오   | 정  |           |     |      |  |  |  |
|--------|--|---|--|-----------|-----|------|--|--|--|
| 1043   | 표 ②<br>내용 수정  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종 류</th> <th>소방시설 적용기준</th> <th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소화기구</td> <td>                     ①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<br/>                     ㉠ 연면적 33m<sup>2</sup> 이상인 것<br/>                     ㉡ 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지정 문화재 및 가스시설<br/>                     ㉢ 터널<br/>                     ②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: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                </td> <td>                    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소화용구 등을 법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1/2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종 류  | 소방시설 적용기준 | 비 고 | 소화기구 | ①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<br>㉠ 연면적 33m <sup>2</sup> 이상인 것<br>㉡ 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지정 문화재 및 가스시설<br>㉢ 터널<br>②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: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|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소화용구 등을 법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1/2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. |  |
| 종 류    | 소방시설 적용기준  | 비 고   |  |           |     |      |  |  |  |
| 소화기구   | ①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<br>㉠ 연면적 33m <sup>2</sup> 이상인 것<br>㉡ 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지정 문화재 및 가스시설<br>㉢ 터널<br>②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: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|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소화용구 등을 법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1/2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.  |  |           |     |      |  |  |  |
| 1045   | 표<br>자동화재 탐지설비<br>내용 수정  | 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,000m <sup>2</sup> 이상인 것  | 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,000m 이상인 것  |           |     |      |  |  |  |
| 1046   | 표<br>단독경보형감지기<br>내용 수정   | ⑤ ④에 해당하지 않는 수련시설 (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)  | ⑤ <u>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인원 100인 이하 수련 시설</u>   |           |     |      |  |  |  |
| 1048   | 표<br>자동화재탐지설비<br>내용 수정   |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(감지·수신·경보 기능을 말함)과 성능을 가진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.  |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(감지·수신·경보 기능을 말함)과 성능을 가진 <u>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</u> 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. |           |     |      |  |  |  |
| 1049   | 3.<br>내용 수정  | <b>해설</b>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<br>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.<br>여기서, 소방시설이란 옥내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.<br>㉠ 소화설비(소화기구 제외): 옥내소화전설비, 옥외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·간이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소화설비 등 소화설비<br>㉡ 소화용수설비: 상수도소화용수설비<br>㉢ 소화활동설비: 제연설비, 연결송수관설비, 연결살수설비, 비상콘센트설비, 무선통신보조설비, 연소방저설비(삭제)  |  |           |     |      |  |  |  |
| 1067   | 7.<br>내용 수정  | ② 보통 표적의 광속발산도(Lt)와 배경의 광속발산도(Lb)의 차를 나타내는 척도이다. (광도대비, 휘도대비)   | $\therefore \text{대비}(\%) = \frac{\text{배경의 광속발산도}(Lb) - \text{표적의 광속발산도}(Lt)}{\text{배경의 광속발산도}(Lb)} \times 100$     |           |     |      |  |  |  |
| 1076   | 1.<br>내용 수정  | ③ 코브(cove) 조명 : 광원을 천장 또는 벽면에 가리고 이란 벽이나 천장에 반사시켜 간접조명으로 조명하는 방식이다. 천장고가 높거나 천장 높이가 변화하는 실내에 적합하다.  | ③ 코브(cove) 조명 : 광원을 천장 또는 벽면에 가리고 이를 벽이나 천장에 반사시켜 간접조명으로 조명하는 방식이다. 천장고가 높거나 천장 높이가 변화하는 실내에 적합하다.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|      |  |  |  |
| 1092   | 1.<br>내용 수정  | ① 물체의 형상만을 강조하는 기법으로 시각적인 눈부심이 없다.  | ① 물체의 형상만을 강조하는 기법으로 시각적인 눈부심이 없다.   |           |     |      |  |  |  |

| 해당 페이지 | 해당 위치 | 오  | 정 |
|--------|-------|--|---|
| 1104   | 내용 수정 | <p>㉔ 합성수지관 배선공사(경질비닐관 배선공사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열적 영향이나 기계적 외상을 받기 쉽다.</li> <li>• 관 자체가 절연체이므로 감전의 우려가 없으며, 시공이 용이하다.</li> <li>• 화학공장, 연구실의 배선 등에 적합하다.</li> <li>• 옥내의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에도 사용이 가능하다.</li> </ul> <p>㉕ 플렉시블 콘duit공사(가요전선관 공사, flexible conduit)</p> <p>승강기, 전차 등 가변성이 필요한 곳 또는 굴곡 및 증설 공사가 용이한 것에 이용되는 배선공사 방법이다.</p> <p>㉖ 플로어 덕트 공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옥내의 건조한 콘크리트 바닥면에 매입 사용된다.</li> <li>• 콘크리트 바닥 속에 설치해서 「커튼 월(curtain wall)」 설치시나 선풍기, 전화기, 전열기 등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한 옥내배선방법이다.</li> <li>• 사무용 빌딩에 채용되고 있으며 강약전을 동시에 배선할 수 있는 2로, 3로 방식이 가능하다.</li> </ul> |   |